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037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개요	1
-------------	---

II. 주요 내용별 검토	2
---------------------	---

1.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채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2
---	---

I . 개요

1.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03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대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5. 21.

(3) 회 부 일 : 2026. 5.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의 주주가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 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함)하는 경우 그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8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현 행	박대출의원안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8)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 시 주식 양도 소득세 과세이연 - (대상)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u>2026년 12월 31일 이전에</u>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 이상(30%)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재투자한 경우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 * 매각대상기업: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 - (과세특례)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 - <u>2029년 12월 31일 이전</u>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박대출의원안 2026. 5. 21. 발의(의안번호 18207)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¹⁾은 매각대상기업의 주주(창업

1)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주 또는 발기인에 한정)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재투자한 경우,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
에 대하여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해당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참고로,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의미함²⁾.

는 재투자를 할 것

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
자하는 경우

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2.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1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벤처기업등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는 했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
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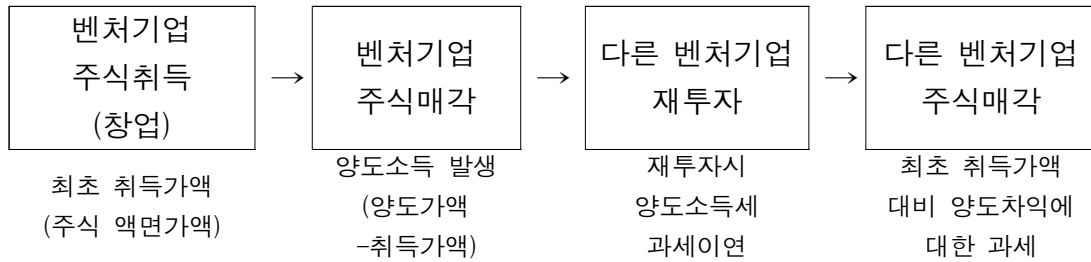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
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
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동 조세특례는 2014년 도입된 이후 2016년, 2019년, 2021년, 2024년 (시행일 기준)에 각각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으며, 2019년에는 매각대금의 재투자 비율을 8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바 있음.

참고로, 동 조세특례에 따른 최근 조세지출 규모는 2022년 12억원, 2023년 및 2024년 각각 15억원으로, 최근 3년 평균 14억원 수준으로 나타남.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2(실적)	2023(실적)	2024(실적)	2025(전망)	2026(전망)
감면액	12	15	15	13	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 동 조세특례는 벤처기업 창업자 등의 기업 매각을 통한 양도차익을 다른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시까지 이연함으로써 재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벤처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지원하려는 취지임.

창업자의 투자금 회수와 재투자를 촉진하여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벤처투자 생태계 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기한 연장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벤처투자는 2021년 7조 6,802억원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였다가 2024년 6조 6,315억원으로 일부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2021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공급과 창업자의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동 조세특례를 일정 기간 연장할 필요성은 인정됨.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현황]

(단위: 개,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벤처투자회사		165	197	231	246	249
투자조합	조합수	206	404	380	290	286
	결성금액	68,645	95,490	110,634	68,031	57,571
투자	신규투자금액	43,045	76,802	67,640	53,977	66,315
	업체수	2,130	2,438	2,474	2,281	2,494

*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지표누리 e-나라지표

□ 다만,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과 관련하여,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³⁾.

문 의 처
02)6788-5150

3) 재정경제부는 제도의 타당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세법개정시 적용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